

지정번호 제 호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명 칭

2. 대표자

3. 소재지

「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직인